

다 이거예요, 이게.

○內務局長 金東勳 앞으로 第1·2號가 있기 때문에 第3號를 援用해서 選拔할 경우에도 第1·2號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基準에 합당한 第3號를 고를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選出職, 選舉職 市長한테 市長의 任用權을 지금 國家政務職인 경우에는 任用資格基準이 아예 없는데 選舉에 當選된 市長의 任用權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制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永和委員 이런 것을 넣으려면 너무 막연하니까 아주 뭐 갖대기를 하나 더 넣어요. 行政經驗이 5年間 있고 學識과 經綸이 있는 者, 이래서 당신들 스스로를 保護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 몰라라 이런 상태인데 이것 안 돼요.

(「民選市長 할 필요없죠」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參考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地方職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地方自治團體가 되면, 그럼 여기 1級 이상의 公務員, 여기 1級이라는 것은 國家職 말하는 것이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아닙니다.

○李永和委員 地方, 國家 다 합해서.

○內務局長 金東勳 國家, 地方 다 합해서입니다.

○李永和委員 표시 안해도 돼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委員 그것은 國家, 地方 뭐 표시 안해도 돼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委員 그냥 1級…….

○內務局長 金東勳 1級 이상 地方, 國家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李永和委員 國家나 地方이나 같아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같습니다.

○權寧斌委員 전 李永和委員님의 말씀에 反對를 하거든요. 民選市長할 적에는 포부가 있고 자기 經綸을 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公務員만 갖다 놓으면 公務員의 長點도 살려야 되지만 民間

人의 長點도 살려야 되지 않나…….

○李永和委員 아니 가만 있어, 그것은 내가 保留하고, 1級 이상의 公務員, 2級 이상의 公務員 이것은 지금 다르잖아요 엄연히. 예를 들어 地方의 副市長들 있잖아요, 地方의 副市長들은 國家 書記官級이란 말이야, 地方 副理事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俸給은 그 俸給을 받지만 格으로 따지면 行政國家 書記官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待遇를 받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國家, 地方 합해서 1級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地方을 상당히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라 이거예요.

○內務局長 金東勳 서울시는 지금까지 國家, 地方 公務員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國家 公務員 1級 이상의 公務員 이렇게, 國家 公務員 2級 이상의 公務員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李永和委員 괜찮겠어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委員 하여튼 그래요. 市長에 當選된 사람이 자기 사람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 第3條가 필요하지만 第3條가 있기 때문에 第1·2條文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委員長 朴禧柱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第2項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 條例案은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 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 한 자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 한 자
3.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잠시 議案番號 1185番, 權寧斌委員과 金鍾雄委員, 白中元委員, 沈相一委員, 韓仁洙委員 또 李永和委員의 여러 가지 意見이 있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意見調整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禧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議案番號 1185番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執行部의 다음과 같이 修正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修正案 內容은 條例案 第3條 中 第3項第1號의 公務員의 6人을 5人으로 하고,

同項 第2號의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7人을 8人으로 하며,

條例案 第5條 中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합니다.

第3項, 當該 紛爭事項과 利害關係가 있는 民間人 委員은 當該 事項의 審議에서 除斥한 다라고 修正한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은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3항 중 1호의 공무원 등 “6인”을 “5인”으로 하고, 2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을 “8인”으로 한다.

안 제5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위원은 당해사항의 심의에서 제척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